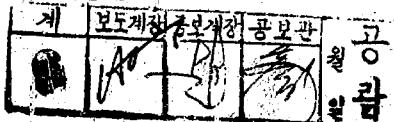


제 1271 호

1986. 4. 16.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윤 모 원
 연습인: 공보관 이 광 우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행정발간실
 전화: 735-3337

시 보

차 래

◎ 공문시행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 95 회 추록 배부 3

◎ 고 시

제 241 호 : 도시지적시설 (수도) 지적 승인	4
제 243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점류장) 변경 시행허가	4
제 244 호 : 사료상분 등록	5
제 249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 허가 (기간연기)	6
제 251 호 : 경사기판의 지정기준 및 업무처리등에 관한고시	6

(이전제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② 공 고

제 226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공람	22
제 229 호 :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변경	25
제 230 호 : 관인 교부	25

③ 구청공고

도봉구 제 188 호 : 관인 신조	26
영등포구 제 25 호 : 직인개자 및 폐기	27

④ 사 경

• 시보기재 의뢰 시행문

(관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법무 02142-178

(731-6156)

1986.4.18

수신처: 수신처 창조

제 목: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 95 회 추록배부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 95 회 추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니 수령 즉시 가제 정리하여 법령집 활용에 차질없도록 할것.

가. 배부기간: 86.4.23 ~ 4.30

나. 배부대상: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유부서

다. 배부장소 및 방법

본 청: 법무담당관실에서, 각과 분임물류 출입원 인정날인 수령
구청 및 사업소: 운송배부

2. 대본보유 부서는 가제정리 상태를 점검하여 미정리된 추록을 제 95 회 추록과 함께 수령, 정리하여 법전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서관 1, 서파 1~5, 9, 10, 16, 18, 21, 23~32, 34~37, 39, 43, 44, 46~50, 52
53, 56, 59~65, 사구 1~17, 셔보 1~7, 10, 13, 15.

29-4 제 1271 호 시

보 1986.4.16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1 호

도시계획시설 (수도) 지적승인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수도) 을 도
시계획법 제 13 조 제 2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
라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제 4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4.16

서울특별시장

○ 지적승인 조사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m ²)	비 고
신 설	수 도	구로구 고척동 산 9 일대	29,560	배수지

○ 지적승인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참조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3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 변경 시행 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99 호 (85.10.
16.)로 시행 허가된 강동구 공덕
동 210-1번지 (서울 고덕택지, 개발
사업지구 19 브록 5호) 상 도시계획
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 건축 변경
을 위한 신청에 의거 변경 시행 허
가하고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86.4.1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 고덕동 210-1
번지 (서울 고덕택지, 개발사업지구
19 브록 5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행 변경
허가.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12-106
서울승합(주) 대표 유재하

제 1271 호

A)

보 1986. 4. 16. 29-5

라.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부지면적 : 당초 - 15,500 m ² , 변경 - 15,500 m ² 전축면적 : 당초 - 2,795 m ² , 변경 - 2,540.75 m ²		연면적 : 당초 - 1,350 m ² , 변경 - 3,202.25 m ² 마. 사업 학수 및 준공 예정일 : 1986. 4. 16. 10. 1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주체, 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 외의 권리명세서									
토지소재지 강동구 고덕동 210-1 (서울 고덕 택지 개발사업지구 19 블 街区 5호)	지적지적 대 15,500m ²	소유자 한국토지 개발공사	소유권이 외의 권리명세서 83.12.7 대지계약 84.2.14 사장승락 86.2.20 구석적리완로 매수 및 사용자 : 서울승인 (주) 유례하								
사. 시행허가 설계도서 : 생략		분 등록 변경하였음을 동법 제 2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244 호		1986. 4. 17.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등록고시		○ 공장명 : 서울미원(주)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아침동 629 ○ 대표자 : 홍현식									
등록번호 번호	사료의 명칭 및 용도	성분 풍 (%)									
		조단백질 전	조단백질 후	조섬유 전	조섬유 후	칼슘 전	칼슘 후	인 전	인 후	포 기발 기본 비 고	
13-18 2개월 미만	젖먹이 쇄지사료	18.5	17	-	5.5	-	0.6	-	0.112.5	8.0	면 경
13-2 6~8주	젖лен 쇄지 사료	18	17	3.5	6.	0.6	0.5	0.4	0.3	2.5	3.
13-38 신3개월 이유식	특수포유돈 사료 임 신3개월 이유식	-	14	-	10	-	0.5	-	0.3	10	10.

29-6 제 1271 호 시

보 1986. 4. 16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9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 (기간연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1 호 (83.11.15.)

1)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된 영등포구 대림동 70 브록 1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경비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4. 1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 시행지 : 영등포구 대림동
70 브록 1호

나. 사업 종류 및 경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신대원시장

다. 사업 시행자 : 서울시 마포구 서교

동 377-11 호 두암산업(주)

대표이사 남상수

라. 사업 규모 (변경없음)

- 지하 1층, 지상 4층, 대기 2,314.30 m²
- 건축면적 1,153.60 m²
- 전면적 6,196 m²

마. 사업 기간

1) 당초 : 1986. 3 ~ 1986. 3.

2) 변경 : 1986. 3. 1 ~ 1987.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의의 권리명세서 (변경없음) : 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에 규정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변경없음) : 생략

丙. 공사 설계도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1 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처리등에 관한 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5 조, 동법 시행령 제 21 조, 동법 시행규칙 제 38 조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동법 제 36 조, 동법 시행령 제 22 조 제 2 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 28 조 제 2 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6. 4. 18.

서울특별시장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업무처
리 등에 관한 고시**

제 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5조 및 제 36조, 동 시행령 제 22조제 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 28조제 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 3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바 있다.

제 2조 (검사대상 업무) ①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업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 3항, 제 39조제 2항 별표 16, 동 시행규칙 제 14조,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29조의 규정 및 동력자원부의 검사기관 지정 및 권한 위탁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대상업무
 - 거장탱크 재검사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 자체검사 및 안전점검의 대행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대상업무
 - 냉동기검사
 - 자체검사 및 안전점검(이하 "자체점사"라 한다)의 대행
-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사

대행업무에 대한 검사기관별 구분은 동력자원부의 별도지침에 의한다.

제 3조 (지정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외에 필요한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4조 (지정절차) ①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 1항 별지 제 26호 서식에 의한 자정신청서에 동 규정 제 38조제 2항 및 이 고시에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 3부로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정신청은 다음 절차와 같이 처리한다.

1. 기술검토: 신청서에만 즉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7조제 3항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 기술검토 의뢰한다.

2. 조사: 기술검토결과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로부터 회시되면 필요시 검사장에 출장하여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조사표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자정서교부: 기준에 적합진 자정신청자에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조제 4항 별지 제 27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명시하여 신

청자에게 통지한다.

제 5조(수수료) ①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검사업무 개시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 수수료규정을 제출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 신출 기초서에는 검사항목별 수수료 산출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별 수수료 요율표
2. 산출기초서 및 수수료 산출판
3. 참고자료
4. 수수료 납부방법 및 필요한 제서식
5. 공인된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검토서
6.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수료 규정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 심사는 "서울특별시 사용료 수수료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별도 고시한다.

제 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인은 이 고시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대표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6조의 제 1호 내지 제 5호의 1에 해당하는 범인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1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사기관의 지정을 취소당한 범인

제 7조(검사업무의 개시신고등)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업무를 개시하거나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검사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검사대상별 검사표 각 1부 (개시 신고일 경우)
 2.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 (휴지, 폐지의 경우)
 3. 보험가입 증명서류 사본 (개시 신고일 경우)
 4.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자인 및 금속박판, 과총 증명서, 성적서, 합격필증 (개시 신고일 경우)
 5. 검사종사원의 채용신고서 (개시 신고일 경우)
 6. 검사업무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개시 신고일 경우)
 7.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사항 최종 확인필증 개시 신고일 경우)
- 제 8조(지정의 제한) 검사대상 물량에 비하여 검사기관이 지나치게 과업되거나 검사기관의 증가로 인하여 부설검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의 취소)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 경지,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별도로 고시한다.

1. 검사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2.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지정기준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3. 지정을 받고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검사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휴지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에게 현저한 위험을 기치게 하였거나 검사업무와 관련 나고를 발생시켰을 때
5. 가스 관계법령 또는 이 고시에 위반한 때

6. 법인의 대표자가 고압가스 안전관 제6조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승계) ① 검사기관을 지정받은 청가 그 검사기관을 대체하거나 타법인과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양수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검사기관과 합의에 의하

여 설립된 결사체 또는 그 결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7일이내에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이 경우 "지정"을 "승계"로 본다.
제11조 (기강사항의 변경신고 등)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범위와 그에 따른 지정을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
2. 장소 변경
3. 검사장비의 변경
4. 검사대상품명 또는 검사규정의 변경

4. 각인 또는 합격증서, 합격증명서등 서식 변경

제12조 (검사원) 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사원의 기용 또는 해임이나 퇴직하는 검사원이 기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고용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원사원"으로 본다.

② 검사업무 현장에는 반드시 분야별 검사작업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검사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검사총괄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의 채용신고 등은 별지 5호 서식에 의한다.

제 13조 (검사표시등) ①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 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지판으로 검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1. 합격명동기의 각인 또는 표시 방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 23조 별표 21의 2호를 준용한다.

2. 재검사에 합격한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각인 또는 표시 방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 23조 별표 21의 4호를 적용하여 표시한다.

③ 자체검사를 대행하여 합격된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합격필증을 교부하여, 불합격된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검사표 사본을 해당사업자에게 송부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의 검사기관이 발급하고자 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합격증명서의 발급은 해

당검사기관의 검사규정에 의한다.
 제 14조 (검사기록의 보존) ①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그 검사기록을 다음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 및 탱크로터와 그 부속품의 검사기록 : 10년 이상

2. 명동기의 검사기록 : 기기의 폐기 시까지

3. 그밖의 것 : 5년

② 검사기록은 검사기관, 검사대상 시설주 및 행정관청 보고서 첨부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5조 (검사계획서 제출) 검사대상 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은 검사실시전에 미리 관할 허가관청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제 6호 서식에 의한 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검사일정표

2. 검사부입 인원현황

3. 기타 부임되는 검사장비명세표

4. 사전조사내용 및 해당업소와 협의된 사항 (저장탱크의 재검사에 한한다)

5. 안전의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등

제 16 조 (검사준비) ①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병드의 재검사를 위한 산가스처리 전에는 한도시 관할 소방서에 통지하고, 관할 소방서의 지시 및 확인을 받은 후 인서할 것이며, 일회화에 할 수도 있다.	② 저장탱크의 태김차를 할 때에는 해당 업소의 필요에 의하여 임시 가스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고 해당 허가증에 임시 가스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시 가스시설 설치 신고서는 협정 제 7호 서식과 같다.	제 17 조 (검사기준) 검사기관의 검사업무를 위하여 적용하는 검사기준과 자체설사 대행시의 검사기준은 가스관제법규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관련되는 동력자원부 고시로 한다.	제 18 조 (보고, 조사 등) ① 저정을 한 관청(관련 타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가스관제법규 및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검사현장이나, 창고 등에서 검사내용, 검사소비등과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진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보험가입) 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검사업무 중 또는 검사업무 후 검사와 관련 있는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액은 가스관제법규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 20 조 (검사업무의 협의) ① 타시·도지사로 부터 해당 타시·도가 별도의 검사기관 지정이 필요없어 각 출입별시·관내 검사기관을 이용하고자 위탁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타시·도를 검사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시·도지사로 부터 검사업무에 대한 위탁협의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서류를 충부·한 주면 된다.	1. 검사기관의 지정서류 및 관련자료	2. 수수료 규정	3.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록점포는 서류	4. 기타 보고, 각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기증서식, 고지 등 제 21 조 (심의) ① 검사결과 불미사관에 관정에 문제가 있음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도록 하며 다음 주호의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조언하도록 한다.	1. 해당 검사장을 감독한 관공기관
---	---	--	---	--	----------------------------------	---	---	----------------------	-----------	-----------------------	--	---------------------

29-12 제 1271호 시

보 1986.4.16

<p>전공사의 담당직원</p> <p>2. 해당검사장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작업 책임자</p> <p>3. 해당검사 대상시설의 사업자 또 는 그 대리인</p> <p>4. 해당검사장을 관할하는 행정판청 의 관계직원</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건 은 검사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검사기판의 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2조(청문) ① 제 9조의 규정에 의 한 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을 행하 기 위하여 검사기판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 는 출석요구서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청문서를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판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 및 청문 서는 출석일 7日前에 노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 1 항의 출석요구서와 청문서를</p>	<p>받은 검사기판의 장 또는 그 대리 인은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여 청 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지정판청에 제 출하여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청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p> <p>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 판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 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은 별지 제 8호 서식의 청문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p> <p>④ 청문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청문 을 거친 후 처분이 확정되면 그 내 용을 동력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협의요청한 시·도에 공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8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1)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 자본금

- 공인검사기관: 3억원 이상 (등기부상 자본금임)
- 전문검사기관: 5억원 이상 (등기부상 자본금임)
 - 다면,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무부장관(법인인가기관)이 승인한 정관에 당해 검사업무의 사업내용이 포함되고 대차대조표상에 검사목적의 적립금 및 감용기관의 관고증명이 있으면 이를 자본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검사기관의 인격

- 공인검사기관: 민법 또는 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전문검사기관: 기술 및 자본능력을 갖춘 법인

3) 검사장 부지

- 공인검사기관: 해당없음.
- 전문검사기관: 부지면적 2,268㎡(약 750평) 이상 (검사전용부지)(자기소유 또는 사실상 자기소유로 볼 수 있는 부지) 확보

4) 사무실

- 공인검사기관: 100㎡ 이상 확보
- 전문검사기관: 100㎡ 이상 확보

5) 검사장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단, 별표 26에서 규정한 검사장비 이상 확보

6) 기술인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단, 별표 26에서 규정한 검사담당 기술인력 이상 확보

- 기술인력 자격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사유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없다.

7)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계약체결: 과학기술처의 전문기술 용역을 통
록을 필한 업소(비파괴검사 전문용역법) 2개소 이상과 신당기
술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

29-14 제 1271 호 시

보 1986.4.16

(별지 1 호서식)

순번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내용	적부판정	비고
1	경관 및 등기부등본	○ 범인 ○ 자본금 ○ 공인: 3억원이상 ○ 전문: 5억원이상			
2	결격사유 유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6조 ○ 신원증명원 확인			
3	기술인력 화보상황	○ 공인 ○ 전문 ○ 기계 또는 화학 1급 2인이상, 기계 또는 화학 2급 3인이상, 비파괴검사 기능사 1급 1인이상			
4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계약여부	○ 과학기술처의 전문기술 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소 (비파괴검사 전문 용역업)			
5	검사장비 화보내용	○ 공인: 내암시형설비외 17종 이상 ○ 전문: X-RAY 활영기 외 25종 이상			
6	검사장비 부지확보 내용	○ 공인: 출장검사시 해 당 없음. ○ 전문: 전용부지 면적 2,268㎡ (700평) 이상			
7	사무실 확보 내용	○ 공인: 100㎡ 이상 ○ 전문: 100㎡ 이상			

제 1271 호

시

보 1986. 4. 16 29-15

개시
 (세자체 2호서식) 검사업무의 (재개, 휴지, 폐지) 신고서

신고인	검사기관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검사기관소재지			
지정사항	지정의 종류	지정번호	지정일자
검사업무 개시일자			
사유			

위와 같이 검사업무를 (개시, 재개, 휴지,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검사대상별 청사표 각 1부(개시 신고일 경우)
	2.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 1부(개시 신고일 경우)
	3.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각인 및 금속박판, 각종증명서, 성적서 학적필증(개시신고일 경우)
	4. 검사증사원의 채용신고서(개시 신고일 경우)
	5. 검사업무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개시 신고일 경우)
	6. 휴지 또는 폐지 사유서(휴지 또는 폐지일 경우)
	7.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경토 사항 최종 확인필증 (개시신고일 경우)

29-16 제 1271 호 시

보 1986.4.16.

〈별지제3호서식〉 검사기관의 지위승계신청서

신고인	검사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사기관소재지		
지정사한	지정외 종류	지정번호	지정일자
지위승계내용		양도 양수	합병 기타
지위승계년월일			
승계사유			
<p>위와 같이 경사기관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신고인 ①</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구비서류 1. 승계사유서</p> <p>2. 양도양수서(양도양수일 경우)</p> <p>3. 합병 또는 합병설립 증빙서류(합병일 경우)</p> <p>4. 대표자 신원증명원</p> <p>5. 정관 및 기부등본</p>			

제 1271 호 시

보 1986.4.16 29-17

(별지 4호서식)

지정사항의 변경신고서

신청인	검사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사기관소재지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또는 장소변경		
검사장비변경		
검사대상 또는 검사 규정변경		
작업 또는 합격표지, 합격증명서등 서식변경		

위와 같이 ~~변기~~변기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①

서울특별시장 규하

규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변경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또는 관련증빙서류

29-18 제 1271호 시

보 1986.4.16.

(별지 제 5호 서식)

<u>검사원(채용·해임)신고서</u>				
신고인	검사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사기관소재지			
채용 또는 해임 내용				
구 분	성 명	자격증번호	(채용, 해임)년월일	담당 검사업무
검사총괄자				
검사작업책임자				
검사원				
위와 같이 검사원의 (채용,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①				
서울특별시장 규하				
주비서류 1. 자격증 사본(채용일 경우) 2.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채용일 경우) 3. 취업동의서(채용일 경우) 4.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채용일 경우)				

제 1271 호 시

보 1986.4.16 29-19

(별지 제 6호서식) 검사 계획서

작성일 :

작성자 :

수첩업소확인 : 직

설명

④

1. 검사대상시설의 상호 :
2. 검사대상시설의 소재지 :
3. 검사대상시설의 대표가 :
4. 검사의 종류 :
5. 검사대상물의 내역 :

6. 검사 신청 내용

- ① ○ 검사신청일 : (수수료액 :)
○ 검사회망일 : (사전조사일 :)

7. 검사 예정일자 :

- 적용검사기준 :
○ 임시조치사항의 필요 여부 :

8. 검사 작업 책임자 :
○ 대상업소 검사 책임자 :

9. 참고사항 :

년 월 일

검사기관명 : 검사기관 소재지 :

대 표 자 : ④

29-20 제 1271 호 시

보 1986.4.16.

(별지 제 7 호서식)

일시 가스 시설 설치 신고서			
신고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임시가스시설 설치 목적			
임시가스시설 설치장소			
임시가스시설 설치 및 사용 방법	(별지 작성 가능)		
임시가스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조치 내용	(별지 작성 가능)		
환경검사 일자			
임시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책임자 명	설치책임자직위 및 자격내용	성명	①
	관리책임자직위 및 자격내용	성명	②
임시가스시설 설치 회사명	회사명	소재지	
임시가스시설 사용기간	(일간)		
상기와 같이 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시·도지사·구청장·군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임시가스 시설의 주위 상황·상세도 2. 임시가스 시설의 시설 명세서 3. 환경 검사필증·사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임시가스시설 설치 목적

임시가스시설 설치장소

임시가스시설 설치 및 사용 방법

임시가스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조치 내용

환경검사 일자

임시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책임자 명

임시가스시설 설치 회사명

임시가스시설 사용기간

설치책임자직위 및 자격내용

관리책임자직위 및 자격내용

성명

성명

①

②

성명

성명

①

②

상기와 같이 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시·도지사·구청장·군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임시가스 시설의 주위 상황·상세도
 2. 임시가스 시설의 시설 명세서
 3. 환경 검사필증·사본

제 1271 호 시

보 1986.4.16 29-21

(별지 제 8호 서식)

청 문 서

1. 원천출두 요청서 : 제 호 ()

2. 위반사항에 대한 의혹 유무 :

3. 소명 요지 : (의견이 있을 때)

4. 기타

년 월 일

대 표 자

⑩

서 울 특 별 시 정 구 하

29-22 제 1271호 시

보 1986.4.16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2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변경 공찰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1호 (86.3.
17)와 동 교시 제 217호 (86.4.
7.)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
획 공람 공고 및 인가고시한 석관동
168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의 1건에
있어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

시계획법 제 25조 2, 동법 시행령 제
27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람공고한다.

-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전송한다.
- 판례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
설관리과에 배치하고 토지건물 소유
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4.16

서울특별시 창

가. 공람기간 : 86.4.19-86.5.2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공 랈 개 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 고
석관동 168번지 7-133의 1	석관동 168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 사	도로개설 B = 8M L = 300M	서울특별시장	인가일 - 87.12.30	변경사항 없음
장위동 105번지 7-37의 58	장위 3동 105번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B = 6M L = 230M	"	인가일 - 87.12.30	"

- 1) 변경 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
지 지적도서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

- 성명: 별첨
2) 기타 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
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랍

제 1271 호 시

보 1986. 4. 16. 39-23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변경) 사항

성북구청

당 조

o 공사명 : 석관동 168 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건 물)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석관동 133-2	연 와 조 기 약	16 m ²	석관동 133-2	이 복 성	
133-62	"	8 m ²	" 133-62	박 광 하	

o 공사명 : 장위 3 동 105 번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도로)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척	주 소	성 명	비 고
장위동 105-12	대지	36 m ²	성북구 장위동 105-2	정 태 현	
" 110-8	"	105 m ²	" 112-4	송 은 수	
" 110-6	"	50 m ²	하월곡동 77-558	유 정 우	
" 110-7	"	65 m ²	성북구 장위동 112-2	장 대 국	
" 105-7	"	1 m ²	도봉구 번동 37-6	이 현 생	
" 105-9	"	1 m ²	동대문구 휘경동 293-47	김 충 관	

o 공사명 : 장위 3 동 105 번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건 물)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장위동 105-7	연 와 조	1 m ²	도봉구 번동 37-6	이 현 생	
" 105-9	슬 라 브	1 m ²	동대문구 휘경동 293-47	김 충 관	
" 36-33	세 멘 와 즐		성동구 장위동 36-23	자 한 선	

29-24 제 1271호 시

보 1986.4.16.

변 경 (정정)

○ 공사명 : 석관동 168 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전 풀)

소재지지번	구조 및 규격	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석관동 133-2	연화조기와	32 m ²	석관동 133-2	이복성	면적변경, 정정
" 133-62	"	16 m ²	" 133-62	박광하	"

○ 공사명 : 장위 3동 105 번지 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 (토 지)

소재지지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비 고
장위동 105-12	매지	77 m ²	장위동 105-2	서태선	성명지적정정
" 112-8	"	105 m ²	" 112-4	송근수	소재지지번정정
" 112-6	"	50 m ²	하월곡 77-558	유정우	"
" 112-7	"	65 m ²	장위동 112-2	장태석	"
" 105-7			보상대 상제외		
" 105-9			"		

○ 공사명 : 장위 3동 105 번지 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 (전 풀)

소재지지번	구조 및 규격	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장위동 105-7	연화조	2 m ²	도봉구번동 37-6	이현행	면적정정
" 105-9	슬라브	2 m ²	동대문구회경동 293-47	김충곤	"
" 36-23	세멘와습	11 m ²	성동구장위동 36-23	이한식	"

제 1271 호 시

보 1986. 4. 16. 29-25

◎서울특별시 공고제 229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변경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3 호 (86.4.3)

로 공고된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
한도액 및 순위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변경공고한다.

1986. 4. 17.

서울특별시장

1. 수급한도액 및 순위변경

순위	면허번호	상호	대표자	'86 수급한도액	
				당초	변경
131	33	302 풍진기술산업	이수남	87,835,000 원	242,797,304 원
207	203	금충전설공사	길종도	57,508,583 원	58,914,410 원

2. 수급한도액 순위변경

당초 수급한도액 순위	변경 수급한도액 순위
33 순위 — 130 순위	34 순위 — 131 순위
203 순위 — 206 순위	204 순위 — 207 순위

◎서울특별시 공고제 230 호

관인교부 공고

중앙청 경비대동 경찰국 외청의 직
인을 관인 규정 제 4 조 제 5 조 및 서
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고 동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6. 4. 19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일자 : 1986. 4. 21.
2. 사용직원
 - 가. 중앙청 경비대장인
 - 나. 서울시 경찰국 기동대장이외
 - 다. 제 101 전투경찰 대장인
 - 라. 제 105 "
 - 마. 제 201 "
 - 바. 제 203 "
 - 사. 제 206 "
 - 아. 제 602 "
 - 자. 제 603 "
 - 차. 제 605 "
 - 카. 제 606 "
 - 파. 제 607 "

29-26 제 1271호 시

보 1986. 4. 16.

인 영			
공인명 증	증 양정 경비대 장인	서울시경찰국 기동대장의인	제 101 전투경찰대장인
인 영			
공인명 제	제 201 전투경찰대장인	제 203 전투경찰대장인	제 206 전투경찰대장인
인 영			
공인명 제	제 603 전투경찰대장인	제 605 전투경찰대장인	제 606 전투경찰대장인
공인명 제	제 607 전투경찰대장인		

구 청 공 고

◎ 도봉구공고제 188 호

관 인 신 조 공 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2조 2항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구 산하 월계제 1동의 분소민원용

직인 및 계인을 신조승인 하였기, 서
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조에 의거 이
를 공고한다.

1986. 4. 17.

도 봉 구 청 장

- 가. 관인신조동명 : 우리구 산하 월계제 1동 (분소민원용)
- 나. 사용개시일시 : 1986. 5. 1 09:00
- 다. 신조관인인영 : 따로붙임

인 영		
공인명 월계제 1동장의인 문노민 원용(직인)	월계제 1동장의인 본소민 원동(계인)	
◎영등포구공고제 25호 직인개각 및 폐기		의거 이률 공고함. 1986. 4. 16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 반사무용 동장 직인을 개각하고 구 직인을 폐기하였기 동규칙 제6조에 따라		
구 관인 		개각 관인

29-28 제 1271 호 시

보 1986.4.16

사	령
---	---

◎ 1986년 4월 21 일자

발령 제 17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 수진	서울특별시 전집율 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충남 홍성군	지방행정서기

◎ 1986년 4월 15 일자

발령 제 180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노태윤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 규정에 의거 3월간 감봉에 처함.	판악구 도시정비과장	지방토목기과
조왕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2 호 규정에 의거 1 월간 감봉에 처함.	구로구 도시정비과장	"
황석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2호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강남구 도시정비과장	"
이원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1, 2호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은평구	"
이구락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제 1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과
김송원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제 1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강동구	지방토목기과
이영태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제 1 항 제 3 호 규정에 의거 3월간 감봉에 처함.	수도공사과장 동대문구	기제기원보

제 1271 호 시

보 1986. 4. 16 29-29

◎ 1986년 4월 18일자

발령 제 18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 광 철	대통령경호실 파견근무 ('86.4.22~'87.4.21)	종로구	지방보건기관장
박 영식	대통령경호실 파견근무 ('86.4.22~'87.4.21)	마포구	지방보건기원보

서울특별시장